



우리사주지원센터
Center for Employee Stock Ow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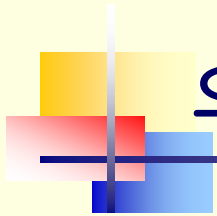


우리사주제도 (ESOP)



우리사주지원팀
www.ceso.or.kr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우리사주제도

- 우리사주에 대한 오해 -

✓ 우리사주는 **대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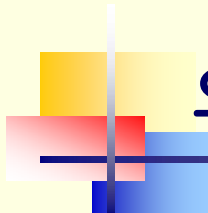
✓ 우리사주는 **노비문서다!**

➤ 조합장이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 회사의 무상출연만이 우리사주제도다!

➤ 비상장 회사는 도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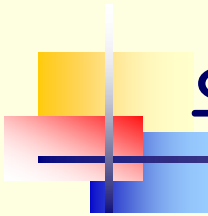


우리사주제도

- 증권시장의 격언 -

-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를 이길 수 없고,
 - 기관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고,
 - 외국인투자자는 대주주를 이길 수 없다.
- ❖ 정 보 량 : 개인 < 기관투자자 = 외국인투자자 < 대주주
- ❖ 자 금 량 : 개인 < 기관투자자 = 외국인투자자 < 대주주
- ❖ 투자기법 : 대주주 < 개인 < 기관투자자 < 외국인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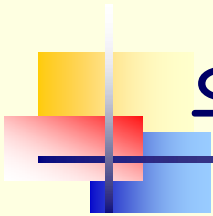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

□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제도

- **우리사주제도** - 한국의 근로자주식소유제도
 -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미국의 근로자주식소
유제도로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상 적격 근로자주식
소유제도
 - **AESOP(All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 - 영국의 근로자
주식소유제도(최근 개칭 SIP; Share Incentive Plan)
-
- **401(k) Plan** - 근로자 저축액과 이에 대응한 기업출연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사주 등에 투자에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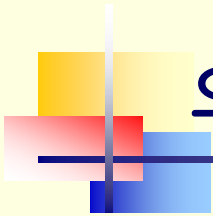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

❖ 우리사주는

-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조합은 자사주를 취득만 할 수 있고 처분은 할 수 없음.
-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중인 자사주
 -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지 않은 자사주는 우리사주가 아님
- 취득을 강제화 할 수 없음
 - 투자의 손익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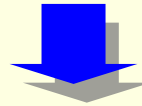




우리사주제도

- 우리사주제도 -

자본주의(Capitalism)는 자본(Capital)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자본가(Capitalist)를 확대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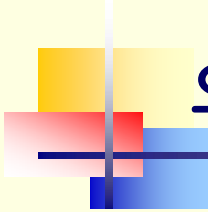


빈부격차확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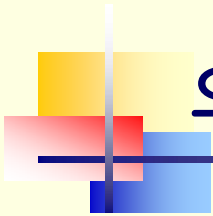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 근로자 -

- 자사주 소유를 통한 회사 성과 공유로 재산형성에 기여
- 해산 등의 경우 근로자의 회사인수로 고용 유지 효과

- 기업 -

-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회사의 경영성과 증대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임금협상의 탄력성 확보
-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수단 활용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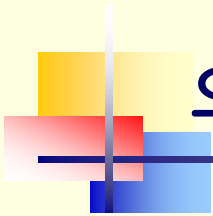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 주주 -

-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향유
- 비상장 기업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 정부 -

- 소유 분산을 통한 부의 공평분배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 생산적 노사 협력관계 구축
-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 도모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능동적 소유의 가장 광범위한 분산은 ESOP에서 나온다. 이는 대단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로서 근로자의 이기심과 기업의 이기심을 긴밀하게 결속하며, 경영자와 근로자가 소유자가 되면 좋은 실적과 더불어 책임감이 회사에 골고루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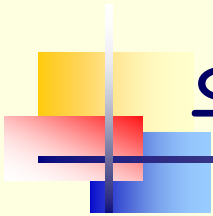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 Edward Regan & Joe Gibson -



우리사주제도의 순환구조

- 순환구조 -





우리사주제도의 연혁

- 연혁 -

□1958.10 (주)유한양행 종업원에게 자사주 지급(우리사주 효시)

□1968.11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종업원 10% 우선 배정

□1974. 5 “종업원지주제도 확대 실시 방안” 발표

▶ 우리사주조합, 의무예탁제도 도입

▶ 비공개기업 우선배정 허용

□1997. 4 “증권거래법”으로 제도 관련 규정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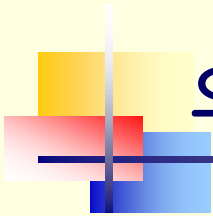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2001.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제도에 관한 기본법)

※ 증권거래법에 상장(예정)법인 우선배정제도 유지

□2005. 3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 도입





우리사주제도의 법률체계

- 법률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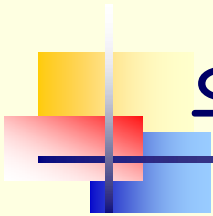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 근로자복지기본법

- 우리사주제도의 기본법
- 적용대상 : 모든 주식회사의 조합 및 조합원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 증권거래법

-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적용
- 적용대상 :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운영 및 우선배정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우선 적용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와





우리사주제도와 한국증권금융의 역할

- 증권금융의 역할 -

□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전담 수탁기관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전담 수탁기관**

□ 우리사주조합기금 수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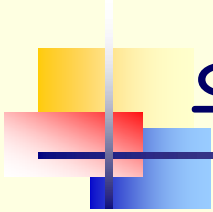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
과 함께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수탁기관**

□ 우리사주조합 차입 대상 금융기관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 우리사주제도 상담·교육 전문기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조합 설립 -

□우리사주조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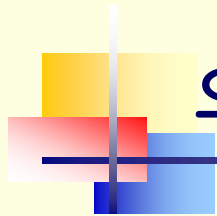
-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
- 상법상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면 설립 가능
- 비법인 사단으로 모든 행위능력보유(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설립은 자유로우나 해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 설립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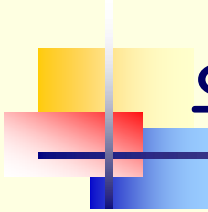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설립일정표 -

일 정	진 행 절 차	주 관 처	대 상 처
D-30	제도도입 검토 및 우리사주 교육 참석	조합설립추진반	
D-28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D-23	조합 규약(안) 작성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D-20	근로자에게 제도 설명 및 회사와 협의		근로자,사업주
D-15	근로자의 조합 가입 신청서 접수		희망 근로자
D-13	조합창립총회 개최 공고		조합가입 적격근로자
D-5	조합창립총회 개최 (조합 규약 확정 및 임원 선임)		
D-1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한국증권금융
D	조합 설립 신고 및 신고 사실 통지		지방노동관서
D+1	우리사주조합 업무 추진	조합장 등 임원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에 따른 신고 -

□ 조합 설립 신고

- 3주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설립 신고
- 조합 설립 신고 후 노동사무소에서 신고 확인서 발급

□ 조합 이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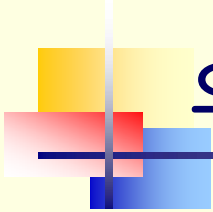
- 3주 이내에 이전 지역 관할 노동사무소에 이전 신고

- 조합설립에 따른 보고사항 -

□ 운영상황 보고

-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운영상황 보고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 조합의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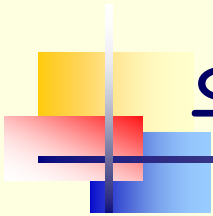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 조합원총회 :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 기타 중요한 사항

□ 대의원회 : 조합원 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 기관

- 직급, 직능 또는 사업장 등의 구분단위별로 선출
- 구체적 구분 단위는 규약으로 정함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 조합의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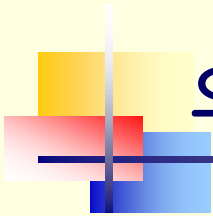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 회사와 조합이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는 **임의적 협의체**

- 각각의 대표 2인 이상 10인 이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결과의 이행 담보를 위해 조합과 회사가 약정 체결 가능

➤ 주요 협의 내용

- 우선배정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출연 및 출연주식의 배분, 배정 사항
- 회사의 조합사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자금 지원 등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자격 -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가입과 탈퇴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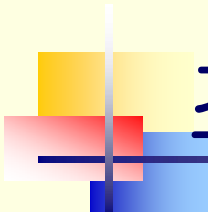
- 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모든 근로자
- 지배회사(모회사) 조합이 동의한 관계회사의 모든 근로자

- 관계회사 -

□ 관계회사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자회사)
- 위의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한 비상장 회사(손자회사)





조합원 자격

- 관계회사 근로자의 지배회사 조합 가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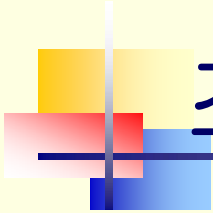
□ 요건

- 관계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 지배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해산(다만, 자사주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효과

-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근무하는 회사가 무상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당해 회사 근무 조합원만이 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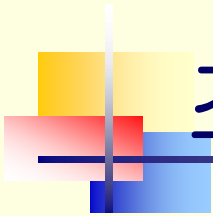


조합원 자격

- 조합원의 자격 상실 -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 임원)
- 당해 기업의 주주(소액주주는 제외)
 - 소액주주 : 당해 회사(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해당 금액 또는 3억원(권면액) 중 적은 금액 미만 소유자
 - 납입자본금 300억원 초과 법인 : 권면액 3억원 미만
 - 납입자본금 300억원 미만 법인 : 1% 미만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중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조합원 자격

- 조합원의 자격 상실 -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

□ 특수관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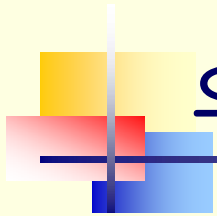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자목 해당하는 특수관계인(혈연 등의 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

- 자격 상실 유예 -

□ 배정 받은 자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해 자격 유지

-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 관계회사에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우리사주조합 기금

- 조합기금의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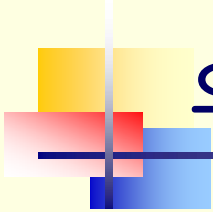
□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사업주, 대주주 등의 금품 출연
-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 등
-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그 밖의 기부금

- 조합기금의 관리 -

- 증권금융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및 회사 상환 차입형 상환에만 사용가능
-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 사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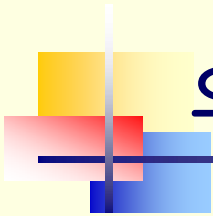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관리

- 조합기금의 예치 -

- 법인격 없는 사단인 조합의 금융거래는 대표자인 조합장의 실지 명의로 의함
- 조합장 개인계좌와 구분하기 위해 조합명을 병기하여 개설 (예,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장 홍길동”)
- 조합기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계좌개설시 비과세 처리 여부를 필히 확인
-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및 노동부 신고 확인서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조합원총회 의사록 사본
 - ✓ 조합장 실명확인증표





우리사주의 취득

- 자금 출연 방법 -

□ 조합원 출연

- 우선배정 : 유상증자 및 모집·매출시 우선 배정으로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로 취득
- 시장매입 : 시장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입 취득

□ 조합원 이외 자(회사, 대주주 등)의 출연

- 회사나 대주주 등이 자사주 또는 금전의 출연으로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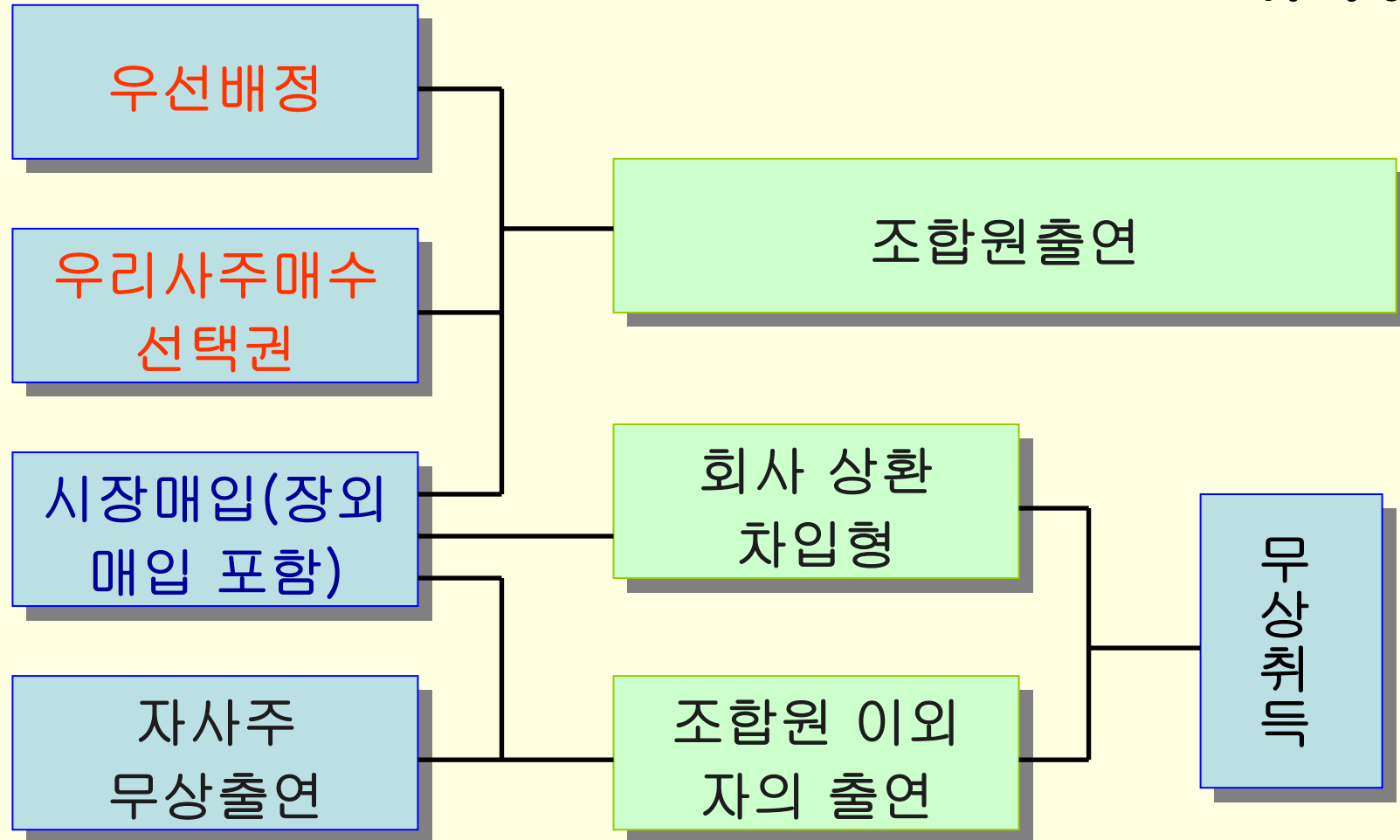
□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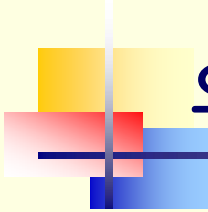
- 회사나 주주의 보증 또는 상환 책임의 차입금으로 취득



우리사주의 취득

- 취득방법 -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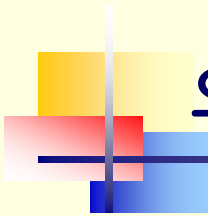
- 법률규정에 근거 -

-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 조합원은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20%를 우선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
 - ※신주의 20%이내 우선배정(발행주식총수의 20%초과 못함)
 - ※개인별 연봉범위(청약전 12개월간 급여) 초과 못함(상장예정법인은 제외)
-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비상장법인(근복법 제32조, 제32조의3)
 - 회사는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음
 - ※신주의 20%이내 우선배정(발행주식총수의 20%초과 못함)

- 정관규정에 근거 -

- 제3자 배정규정에 의한 배정
 - ※신주의 0%~100%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의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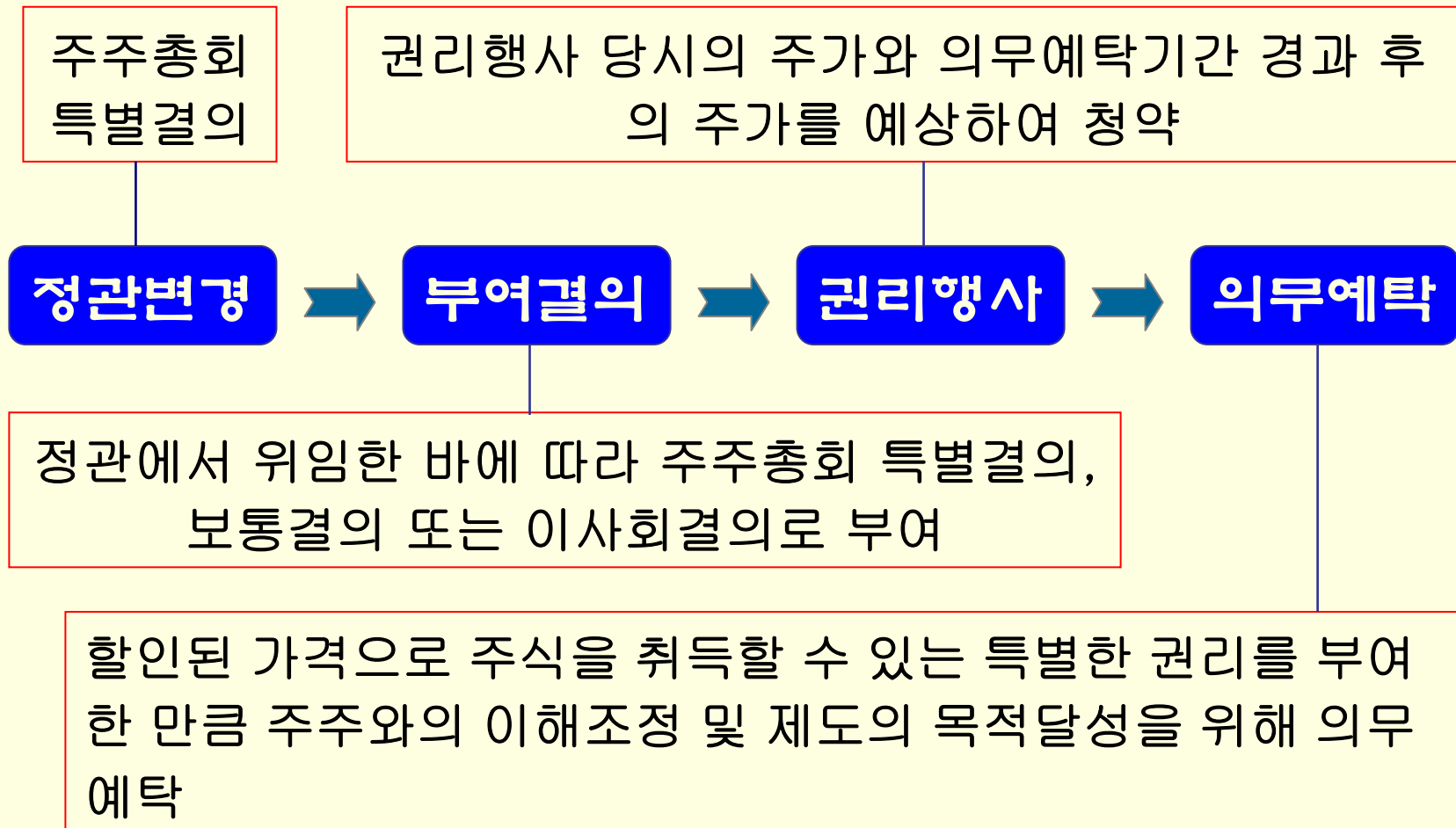
□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부여 시점 평가
가액의 **80%**이상의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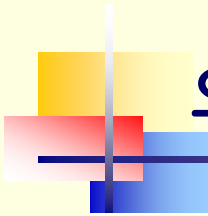
- 일정한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유사
-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할인율 및 의무예탁이
적용되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구별

➤ 조합원에게 낮은 위험부담의 자사주 매입 기회 제공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절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권리부여 방법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신주의 발행이나 회사 보유 자기 주식 양도의 방법으로만 부여가능(차액 보상 불가)

- 행사가격 -

- 권리부여시 평가가격의 80% 이상(권면액 이하일 경우는 권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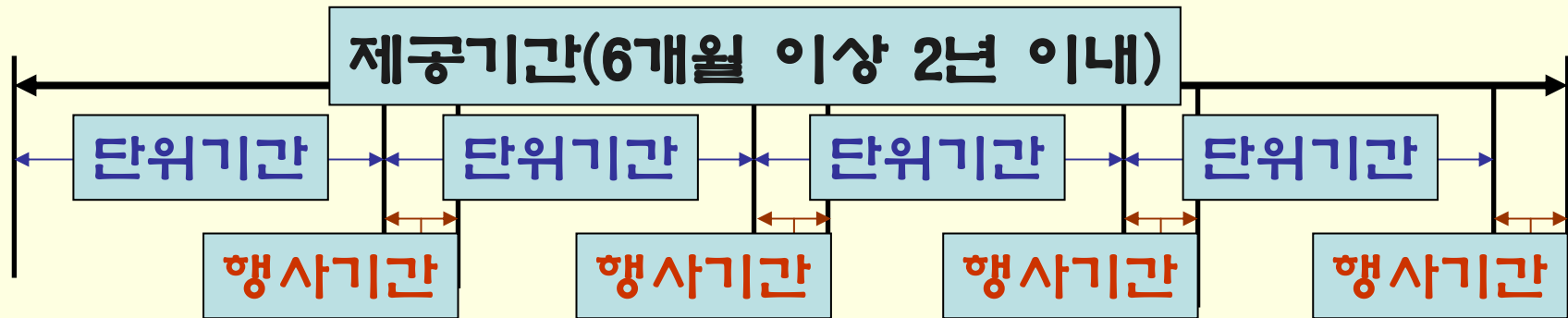
□평가가격

- 상장법인 : 권리 부여일(단위기간 개시) 직전 거래일(기준 일)로부터 1개월, 1주간 및 기준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하여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준일 종가 중 낮은 가격
- 비상장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우리아주매수선택권

- 제공기간, 단위기간, 행사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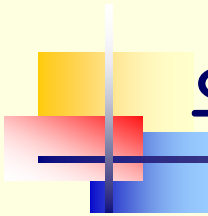
□제공기간(권리존속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주식매수선택권의 대기기간과 행사기간을 합한 개념

□단위기간 : 6월 또는 1년 단위로 행사기회를 부여한 기간

- 제공기간 중 권리의 총수량을 균등하게 분할(권리 이월 불가)

□행사기간 : 단위기간(또는 제공기간) 말일 또는 말일로부터 7일 이내(따라서 제공기간은 2년 7일 이내가 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제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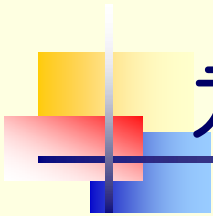
□ 조합 및 조합원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도록 우선 배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불가

- 조합 및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수는 이미 부여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할 주식수 포함하여 계산

- 기타 -

- 조합원별 한도는 연간 6백만원(행사가액을 기준) 이내
- 1년 미만 근속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 부여 제한 가능
- 권리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가능
-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조합원 자격 상실시 행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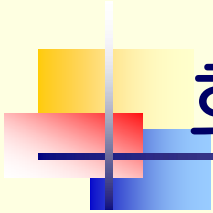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 의의 -

□ 조합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제도

- 차입금 상환 책임 주체가 조합원인 경우는 조합원 상환형,
회사 등인 경우에는 회사 상환형
- 조합원 상환형은 조합원의 자금 출연에 의해 차입금을 상
환하는 제도(조합원 출연 자금 취득 자사주와 동일)
- 회사 상환형은 회사 또는 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취득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계정에 배정)





회사 상환 차입형

-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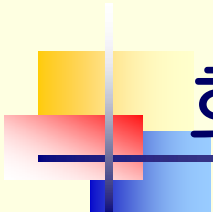
□ 차입절차

- 조합은 회사와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약정
-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조합과 서면 약정 체결
- 그 약정을 바탕으로 조합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 차입한도

- 차입금 총한도 :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의 급여총액 이내
- 1회계연도 차입한도 :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의 10%에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 이내(급여총액의 70%이내)





회사 상환 차입형

- 주요 내용 -

□차입기간 : 3년 이상 7년 이내

-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환시 잔여차입기간 초과 불가

□담보제공

-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당해 용자 또는 용자보증기관(당해 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 가능
- 차입금 상환액 해당 담보는 상환 즉시 담보해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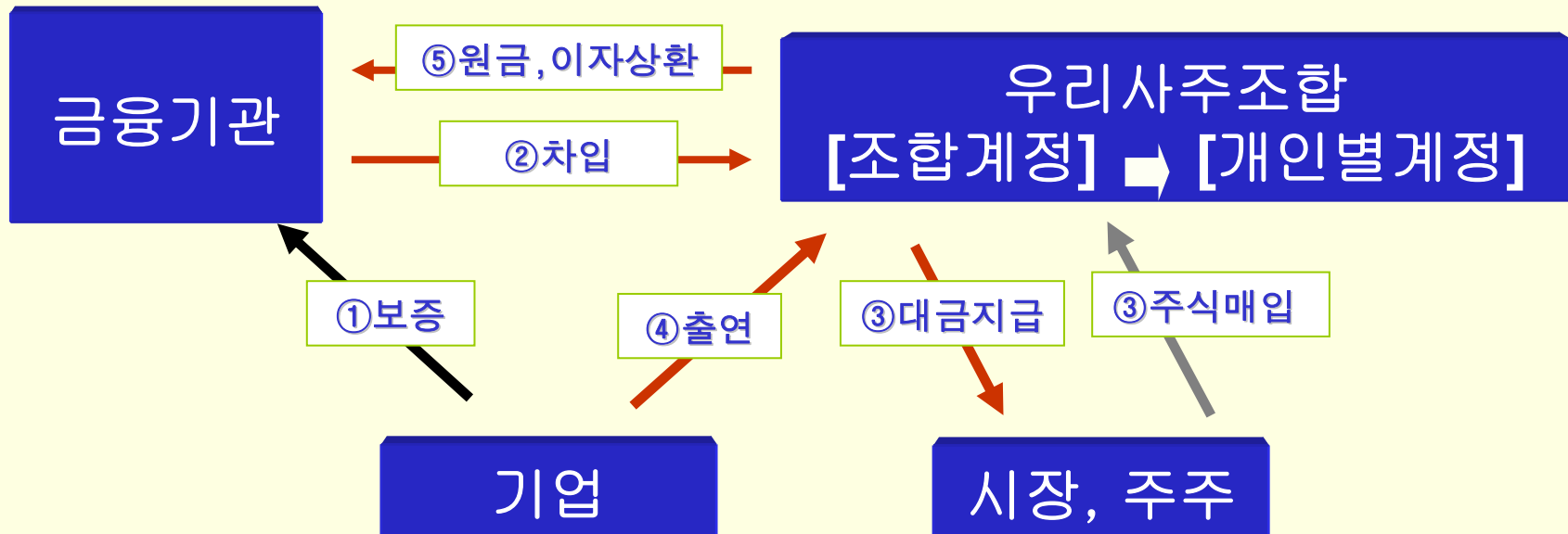
□배정방법

- 취득 즉시 조합계정에 배정
- 차입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계정에 배정



회사 상환 차입형

- 직접 차입형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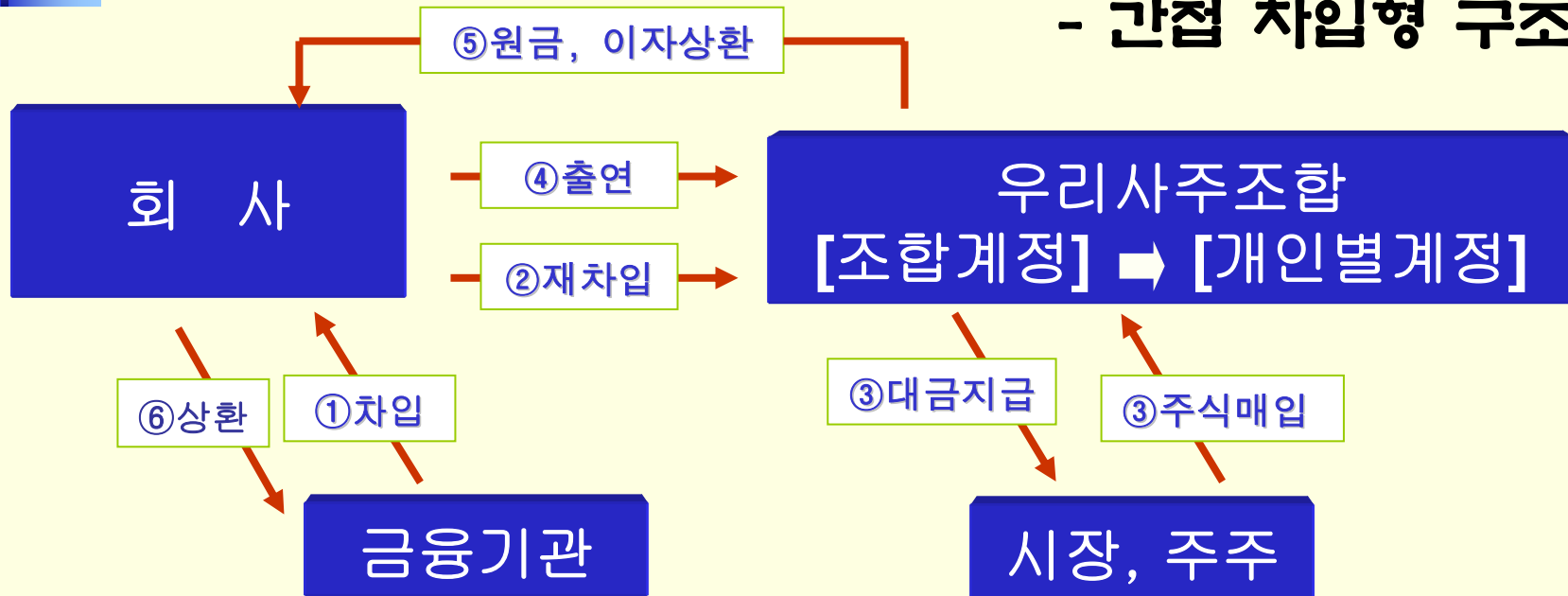


- 회사의 보증 등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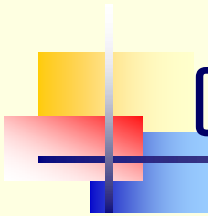
회사 상환 차입형

- 간접 차입형 구조 -



- 회사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 조합은 동 차입금 재차입
- 조합은 회사 무상출연으로 회사 차입금 상환, 회사는 조합의 상환액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대응출연에 의한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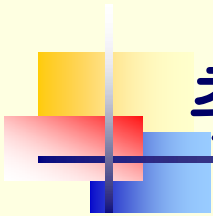
- 대응출연에 의한 취득 -

- 조합원이 출연한 자금에 비례하여 사업주 등이 자사주나 금품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취득하는 방법
- 법에 규정된 방법은 아니지만 일방의 출연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실무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대응출연 사례(포스코) -

- 조합원과 회사가 1:1로 대응출연
- 조합원 출연으로 회사보유 자기주식을 취득, 회사는 조합원 취득분과 동일수량의 주식을 조합에 무상출연
- 회사출연 : 301억(02년), 392억(03년), 813억(04년), 806억(05년)
- 동 계획은 02~06년 까지 5년에 걸쳐 실시예정





취득 자사주의 관리

- 취득 자사주의 예탁 -

□취득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예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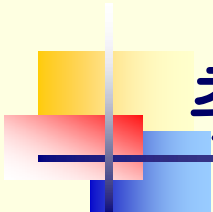
- 우선배정 등 신주의 취득 : 신주권 교부일
- 시장매입(장외거래포함) : 매입 완료일
- 조합원 이외 자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 예탁 자사주의 담보 제공 등 -

□예탁된 자사주는 다음 이외에는 담보제공 금지

-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융자 또는 융자보증기관에 담보제공
- 생활안정자금 조달 목적의 잔여예탁기간 1년 미만의 개인별계정 자사주의 담보제공. 단,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 실행 불가





취득 자사주의 배정 방법 및 예탁기간

- 조합원 출연 취득(조합원 상환 차입형 포함)



-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 배정
- 1년간 의무예탁

- 조합원 이외 자의 출연 취득(무상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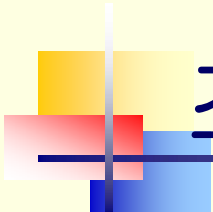
-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 배정
- 4~8년간 의무예탁(출연자와 협의)

-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취득(무상취득)



- 취득 즉시 조합계정 배정
- 상환액 범위 개인별계정 배정
- 1년간 의무예탁





조합원 이외 자의 출연 자사주의 처리

- 배정 원칙 -

□ 조합 취득시 조합원에게 배정(즉시 개인별계정 배정)

➤ 자사주 취득 당시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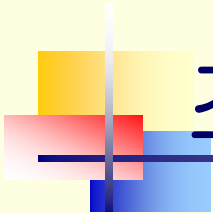
- 자사주 출연의 경우에는 출연 당시의 조합원
- 금품 출연의 경우는 조합의 자사주 매입 완료일 조합원

- 배정 주식의 회수 -

□ 자발적 퇴직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하는 자사주

- 조합은 출연자와 협의한 의무예탁기간(4~8년)의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회수
- 회수된 자사주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





조합원 이외 자의 출연 자사주의 처리

- 배정 및 회수의 예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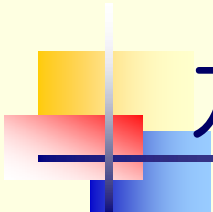
□배정 및 회수의 예외

- 회사 등의 무상 출연 등으로 조합기금 조성 당시 조합원이 정년 도달 등의 특별 사유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배정
- 특별 사유로 퇴직한 경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회수하지 않음.

□특별한 사유 적용대상자

- 조합원의 사망 및 정년에 의한 퇴직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해고로 인한 퇴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7급 이상 장애로 인한 퇴직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자사주의 예탁기간 예외

- 유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개인별계정의 유상증자 : 예탁 임의화

- 개인별계정에 예탁중인 자사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예탁하지 않아도 됨.

➤ 조합계정 유상증자를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1년간 의무예탁

- 무상증자 자사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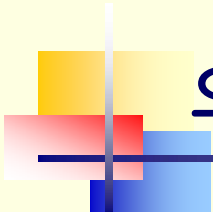
□개인별계정의 무상증자 주식 : 원주의 잔여예탁기간

-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예탁 임의화(신주교부일)

□조합계정의 무상증자 주식

-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 하는 자사주를 개인별 계정에 배정





우리사주의 권리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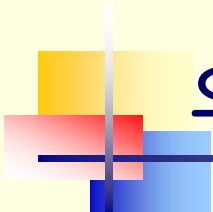
- 배당금(주식배당 포함)의 처리 -

□개인별계정 자사주의 배당금 : 조합원에게 지급

□조합계정 자사주의 배당금

- 회사 상황 차입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자사주 취득 후 최초 차입금 상환액 개인별계정 배정시 합산 배정
- 회수된 자사주의 배당금은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
- 종전 규정에 따라 가배정 상태의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





우리사주의 권리 행사

- 의결권 행사 -

<조합원계정 보유주식>

7일이상 조합원 의사확인

- 1) 조합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행사
- 2) 조합원이 본인 주식보유분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
- 3) 의사표시(위임요청)없는 주식은 **Shadow Voting**

<조합계정 보유주식>

규약에 정한 다음중 한가지 방법으로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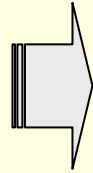
- 1) 조합원계정 보유주식의 의사표시 비율로 행사
- 2) **Shadow Voting**
-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대로 행사



우리아주제도의 세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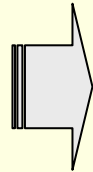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출연금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 취득주식 3년 보유시 : 50% 비과세
- 취득주식 5년 보유시 : 75% 비과세

무상 취득분
과세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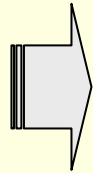
- 기업•대주주 등 출연분 무상 취득 :
인출시까지 과세 이연(인출시 과세)
 - 취득주식 3년 보유시 : 50% 비과세
 - 취득주식 5년 보유시 : 75% 비과세
- ※ 기업출연분 과세이연 한도 - 연간급여액
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



우리아주제도의 세제지원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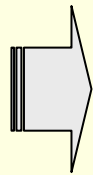
배 당 금
비 과 세



- 배당소득 비과세

- ▷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선비과세
- ▷ 액면가 5,000만원(2007년부터 1,800만원)이하 주식의 배당금 전액 비과세

저 가 취 득
비 과 세



-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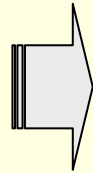
- ▷ 시가보다 낮게 취득시 그 차액 비과세
- ※ 단, 법인으로 부터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70%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 (2002.12 신설)



우리아주제도의 세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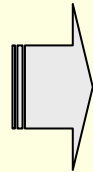
-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출연금
손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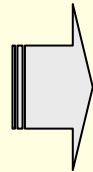
- 조합 출연분(자사주·금전) 손비 인정
 -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지급
 - ▷ 무상출연한 자사주 및 금전
- 손비인정 한도 : 당해 연도 출연 전액

저리대출에
대한 혜택



-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 ▷ 자사주 취득자금을 저리, 무이자 지급
 - ▷ 인정이자 해당분 익금 불산입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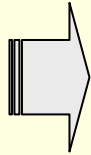
- 조합운영비 지원액 전액 손비 인정
 - ▷ 조합운영비 지원액 전액 복리후생비 처리(손비 인정)



우리사주제도의 세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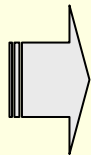
- 기타의 세제지원 -

우리사주조합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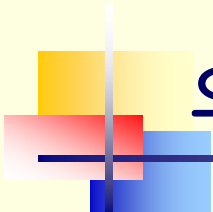
-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대주주출연금
소득공제



- 대주주 출연분(자사주·금전)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사례

- 운영 사례(자금출연) -

□조합원 출연 : 우리금융지주, 국민은행, 쌍용자동차 등

- 조합원 출연금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에 의한 과세이연

□무상출연 : 국민은행, 강원랜드

- 회사가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전액 손비 인정

□대응출연 : 포스코, 대우건설, KT, 대신증권

- 회사와 조합원이 일정비율을 함께 출연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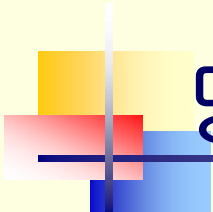
- 운영 사례(취득방법) -

□우선배정 : 우리금융지주, 엘지필립스, 엘시디

□시장매입 : 국민은행, 쌍용자동차,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장외매입 : KT, KT&G, 좋은 사람들, 현대캐피탈, 서울신문





당사 대출의 특징

□우리스주지원대출 전담기관이다.

✓ 당사는 근복법상 대출 담당 금융기관

□대출기간이 자유롭다.

✓ 대출기간이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 선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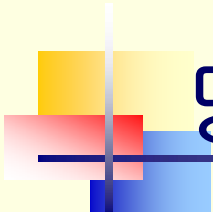
□서류작성 등이 편리하다.

✓ 청약과 대출신청이 동시에 가능

□담보처분이 편리하다.

✓ 우리스주 매도에 의한 상환 가능





당사 대출 조건

- 대출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 대출한도 : 5,000만원(단, 주식 취득가액의 100%이내)
- 대출이율 : 5.5 ~ 8.0%(담보 및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담보비율 : 100% 이상
- 담보증권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상환방법
 - ✓ 원금 : 월단위 균등 분할 상환(거치기간 설정 가능)
 - ✓ 이자 : 매월 납입





우리사주지원센터

Center for Employee Stock Ownership

www.ceso.or.kr

수고하셨습니다.